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 
람

기관의장

제2002호 2026. 5. 28.(목)

차 례

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0호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(변경) 결정·고시 ——— 1

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 3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-100호

## 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(변경)결정·고시

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「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」을 다음과 같이 (변경)결정·고시합니다.

2026. 5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건 명 : 「2026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(변경)결정·고시」

### 2. 결정항목

○ 2026년도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- 표준가격기준액 :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·고시하는 금액
-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
- 산정지수(용도지수, 층지수, 가감산율)

○ 2026년도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·고시

- 건물신축가격기준액 :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형별 신축단가를 고려하여 산정·고시하는 단위면적 당 건축비용
-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및 산정기준
- 적용지수(구조지수, 용도지수, 위치지수)
-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

- 가감산특례
- 증·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요령 등
- 2026년도 기타물건 기준가격 변경 결정·고시
  - 기타물건 기준가격 중 차량 22종, 에너지공급시설 30종

### 3. 세부내역

- 서구청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
- 기타물건 기준가격 재고시 목록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

- 부 칙 -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기타물건 중 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-1343호

#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. 5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1. 폐지이유

- 「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(설치 등) 제3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2026.7.1. 공포 및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조례의 준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## 3. 의견제출

-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 노인 장애인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전화 032-560-3061, 팩스 032-560-2741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폐지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설치 등) 제3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,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2026.7.1. 공포 및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감사실 합의

라. 기 타: 해당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설치 등)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자치구 명칭	관할구역
제물포구	<p>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·중앙동2가·중앙동3가·중앙동4가·해안동1가·해안동2가·해안동3가·해안동4가·관동1가·관동2가·관동3가·항동1가·항동2가·항동3가·항동4가·항동5가·항동6가·항동7가·송학동1가·송학동2가·송학동3가·사동·신생동·신포동·답동·신흥동1가·신흥동2가·신흥동3가·선화동·유동·율목동·도원동·내동·경동·용동·인현동·전동·복성동1가·복성동2가·복성동3가·선린동·송월동1가·송월동2가·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</p>
영종구	<p>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</p>
검단구	<p>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·마전동·당하동·원당동·대곡동·금곡동·왕길동·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·검암동·오류동의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=551024.13 Y=164856.52, X=551750.38 Y=166178.22, X=552396.98 Y=168075.73, X=552570.66 Y=170050.11, X=552593.01 Y=170576.65, X=552493.80 Y=171346.47, X=552459.45 Y=172047.07, X=552479.91 Y=172812.68, X=552523.04 Y=173557.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</p>

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.

## 의견제출서

1. 자치법규명

2. 성명(단체명/대표자)

주소

3. 의견

4. 기타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- 비 고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 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